

등록번호	공간정보제도과-1901
등록일자	2021. 04. 15
결재일자	2021. 04. 15
공개구분	비공개(5)

시설사무관	공간정보제도과장	국토정보정책관	주택토지실장
정은정	유승경	남영우	2021. 4. 15. 김수상
협조자	규제개혁법무담당관		양종호

<b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</b>	주요 검토사항	
	정책 중요도	보통
	민원·갈등 가능성	없음
	기관간 이견가능성	없음
	홍보대책 필요성 (홈페이지 등록 필요성)	보통
	서민생활 관련성	보통

무인비행장치(드론)측량, 정밀도로지도 구축,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등 성과심사에 대한 수수료 산정기준 마련 등 측량·지적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

**국토정보정책관**  
**공간정보제도과**

#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

## □ 추진배경

- 공공측량 성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이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위탁·운영 중이며, 시행규칙에서 정한 성과심사 수수료를 받고 있음
- 그러나, 무인비행장치(드론) 측량, 정밀도로지도 구축, 지하공간통합 지도 구축 등에 대한 성과심사는 수수료는 산정기준 없이 운영중이며,\*

\* 現 「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제32조 제3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산정하고 있는 상태

- 기준점 측량의 경우 기지점(3점 이상)을 반드시 포함하여 현지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지점에 대한 산정기준이 누락된 상태

☞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성과심사 수수료 제도\* 등에 대해 개선 필요

\* 감사담당관실 주관 공간정보산업 관련단체 종합감사 지적사항( ' 20.12.)

## □ 개정안 주요내용

- 공공측량성과심사 수수료 기준 개선(시행규칙 별표13)
  - 공공측량성과에 대한 심사 대상에 무인비행장치 측량, 정밀도로지도 구축,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등의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기준 신설
  - 기준점측량 심사를 위한 현지심사시 '기지점'과 '미지점' 관측이 수반됨에 따라 '기지점'을 포함한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으로 개정
  - \* '미지점'이란 측량수행 시 구하려는 점, '기지점'이란 기본측량성과 등으로 이미 그 결과 값을 알고 있는 점을 말함
- 기타 측량·지적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제도 개선
  - (측량업자 지위승계) 측량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으로 인한 지위승계와 폐업을 동시에 신고하려는 경우 첨부서류 간소화(제51조제1항)
  - (큰글자 서식) 연간 지적공부등본 발급이 8천만건에 달하고 토지소유자의 대부분이 고령인구로 열람신청서식을 큰글자 서식으로 개정하여 민원

편의성 제고(별지 제7호)

□ **향후 추진일정**

-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: '21. 4 ~ 5월
- 법제처심사 : '21. 6월
- 공포 : '21. 7월